

보도자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경제민주화 · 창조경제 구현



2016년 12월 13일(화)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지정책국 약관심사과

담당과장: 민혜영(044-200-4450)

담당: 고유진 사무관(044-200-4462)

안창모 사무관(044-200-4447)

최유리 조사관(044-200-4456)

한정무 법무관(044-200-4463)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12월 14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3일(화) 낮 12시

공정위, 금융투자회사 등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가압류 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전자금융거래 시 사업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조항, 담보 제공 불이행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 등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총 843건의 금융 **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함.(2016년 12월 7일) ○ (신용거래)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되면 기한이익을 상실 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통지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 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보다 완화한 조항
 -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채권자 등에 의해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신청된 것만으로도 최고없이 즉시 해지하는 조항
- □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금융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1. [신용거래·장외피생상품거래] 가압류·가처분을 이유로 한 기한이익상실 및 계약해지 조항

가. 약관 조항

○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가처분되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신용거래약관(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5. 회사가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u>가압류</u>,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 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oo은행 약관)

제 6 조(귀책거래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 7 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u>해당</u>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u>가압류나 가처분</u>,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이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u>가압류, 가처분</u>,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나. 시정요청 사유

- □ 기한이익상실* 및 계약해지는 고객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고객 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 *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함.

- 가압류·가처분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로 추측 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쉽게 인용(만시집행법 §279②, §301) 되어 남용될 소지가 있음.
 - * 전국 법원의 가압류 인용률은 90.27%(2002년~2014년 평균, 대법원 사법연감)
- 압류, 체납처분, 파산·회생결정과 달리 가압류·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 으로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고객에게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따라서 예탁금 등 고객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사례)

투자자 A씨는 B증권회사로부터 2016년 6월 1일을 기한으로 매수대금을 빌려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2016년 4월 1일 A씨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D씨가 A씨의 B증권회사 예탁금에 가압류하자, B증권회사는 A씨에게 매수대금을 즉시 갚도록 하였다. 이에 A씨는 매수대금을 변제하기위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B회사 주식을 일괄처분하였고. 투자계획도 무산되었다.

2. [신용거래] 별도의 통지없는 기한이익상실 조항

가. 약관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신용거래약관(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u>별도</u>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시정요청 사유

□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등을 해야 함.

- 회사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면,
 고객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연이자 등을 부담할 수 있음.
 - * 채권자(회사)는 채무자(고객) 등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판단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래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다28340 판결 등 참조) 고객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함.
- □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표준약관)의 경우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하고, 은행이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독촉· 통지**하도록 개정 완료(2016년 10월 7일)

3. [전자금융거래]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가. 약관 조항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8조(회사의 책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 항력으로 인한 경우

인터넷 F/X딜링 거래약정서(oo 은행 약관)

제12조(면책) 천재지변 등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및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를 의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시정요청 사유

□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함.

-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전자금융 거래법 제9조, 동 시행령 제8조)
 - * 접근매체(현금카드, 신용카드, 이용자번호, 인증서 등)를 제3자에게 대여·위임·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등
- □ 해당 약관 조항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고객의 책임 사유 외에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u>금융회사</u>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 시 요구하는 추기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시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임. (약관법 제7조 제2호)
- ※ 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표준약관)의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 예정(2017년 3월)

4. [장외파생상품거래] 즉시 계약 해지 조항

가. 약관 조항

①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예시>

거래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게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u> <u>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u>

- 1. 거래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기본계약서 또는 담보관련문서에 의한 <u>담보제공의무의 전부</u>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채권자가 회생·파산신청한 경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예시>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자 등"이라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1. 당사자 등 또는 제3자가 당사자 등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나. 시정요청 사유

□ 민법상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해당 약관 조항은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 등에 의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것만으로도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 현행법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 뿐 아니라 채권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단순 소명만으로 가능함.
- 특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 & Derivative Association, Inc. 이하 ISDA)의 표준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에 대하여는 ISDA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 □ 해당 약관 조항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임.(약관법 제9조 제3호)

5. [CMA] 사업자의 자의적인 서비스 해지·변경 조항

가. 약관 조항

○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변경하는 조항

<예시>

제11조 (약정의 해지 및 변경)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CMA 서비스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약관의 <u>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u>,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주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나. 시정요청 사유

- □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서비스 제공은 계약의 주된 급부로서, 서비스의 해지· 변경·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따라서 **서비스 해지·변경·제한 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 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지·변경·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약관법 제9조 제2호, 제10조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6. [실시간 시세정보서비스] 계약 자동연장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고객이 별도의 "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권한이 자동 연장되며, 매월 첫 영업일에 "고객"의 "서비스" 신청계좌에서 해당월 이용요금이 외화(결제통화)로 자동으로 징수된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고객은 서비스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회사에게 이용 요금을 지급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혹은 종료할 것인지는 중요한 계약 내용임.
 - 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월 단위로 요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임.(약관법 제12조 제1호)

7. [비상장 주식 중개서비스] 중개신청을 제한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회사는 비상장주식 거래자가 신청한 가격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u>거래자의 중개</u> 신청에 응하지 않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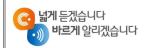
1. 수량과 가격을 반대로 입력한 경우

나. 시정요청 사유

- □ 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짐.
 - 고객이 수량과 가격을 반대로 명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거래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함.
- □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기대 효과·계획

- □ 다양한 상품,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심사 대상은 아니나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유사 조항도** 시정을 요청하여,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 금융투자약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임.
 - ※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신전문금융(1월, 10월), 은행(7월), 상호저축은행(7월) 및 금융투자(12월) 약관을 심사하여 총 9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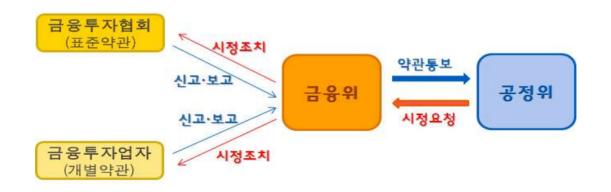
【별첨1】약관심사 대상 및 절차

1. 약관심사 대상

신용거래 약관, 외환증권 매매계좌 약관, 전자금융거래 약관, 금융기관 연계계좌약관, 비상장 주식 중개서비스 약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서비스 약관, 장내·장외 파생상품거래 약관, CMA 약관 등 총 843건 약관 (금융위로부터 2015. 10월 부터 2016.10월 까지 통보받은 약관)

2. 약관심사 절차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또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별첨2】약관별 시정요청 세부내역

약관별 시정요청 조항

I. 신용거래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가압류를 이유로 한	예탁금 등 고객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한
기한이익상실 조항	이익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별도의 통지없는 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한이익상실 조항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II. 외화증권 매매계좌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주요 권리행사에 관한 단순 통지조항	권리행사에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실질
	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에 필요한 방법을 적시하여 통지
한민 중시조용	하고, 고객의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Ⅲ. 전자금융거래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수수료 변경조항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만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사업자의 면책조항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고객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부담
	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임

IV.금융기관 연계계좌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
	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
하는 조항 	하는 조항임

V. 비상장주식중개 서비스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중개신청을 제한하는 조항	수량과 가격을 반대로 입력한 경우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VI. 실시간 시세정보 서비스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월단위로 요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	별도의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의
하는 조항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VII. 인터넷 F/X 거래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사업자의 면책조항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임

VIII.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서비스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청약기간 종료	후	청약기간이 종료하여 "성공"한 경우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금액 및
정보변경 조항		모집자금의 사용목적을 정정할 수 없도록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하여야 함

IX. 청약거래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통신장애 등 청약	서비스 장애, 통신 장애 등으로 청약 미처리·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미처리·지연 시 고객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무를 고객이
확인하도록 한 조항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임

X. 장내파생상품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XI. 장외파생상품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당보제공의무 불이행 시 즉시 계약해지 조항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회생·파산절차 신청시 즉시 계약해지 조항	채권자가 회생·파산신청을 한 경우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가압류·가처분시 계약 해지 조항	고객이나 담보제공자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XII. CMA 약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사업자의 자의적인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자변경 조항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임